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법조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9. 06. 11. (총 10 쪽)

보도자료

검찰의 김학의·윤종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6월 11일 (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오늘(6/1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종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종천은 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습니다. 광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종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김학의·윤종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단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번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붙임2 : 기자회견문

▣ 붙임3 : 「검찰의 김학의·윤종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의 문제점」 (법률조력인단)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종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종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박상도, 이종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과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확산도, 이종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종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민우회·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검찰의 김학의·윤종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에의 문제점

피해자A 법률조력인단

지난 6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이라 한다)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윤종천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A에 대한 강간치상, 여성 B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학의에 대해서는 윤종천과 사업가 C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로만 기소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광OO와 이OO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전 정부 시절 청와대 권력과 고위 검찰 간부들이 적극적·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또다시 김학의와 윤종천의 범죄를 축소하여 기소했으며, 문제의 핵심 원인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피해 여성 A를 지원하는 법률조력인단은 수사단 수사결과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김학의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만 기소, 윤종천과의 합동강간 혐의 불기소

가. 피해 여성 A의 진술을 배제·왜곡하여 김학의의 공모 부정

□ 수사단의 발표 내용

피해 여성 A에 대한 김학의, 윤종천의 합동강간혐의에 대하여, 수사단은 김학의가 피해 여성 A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윤종천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수사단 수사결과 5면] “피해 여성 A는 김학의가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종천이 평소 김학의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김학의에게 자신이 폭행·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 2007. 11. 13.자 성관계 등 사진은 김학의의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윤종천은 자신의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면서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김학의의 강간행위와 그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문제점

그러나 피해 여성 A는 2006. 7.경 윤종천의 별장에서 김학의를 처음 본 날, 김학의와 윤종천이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했고 자신이 울면서 저항하자 윤종천이 심하게 욕을 하며 고함을

쳤고, 당시 김학의도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별장에서 윤중천이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 폭언하는 것도 다 봤다는 진술도 있다. 더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요약하면, 며칠 후 별장에서 김학의로부터 두 번째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윤중천이 A에게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 자리에는 처음부터 김학의가 있었다. 그 후 윤중천은 A를 역삼동 오피스텔로도 불렀다. A가 갔을 때 오피스텔에는 김학의가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윤중천은 A에게 김학의와의 성관계를 요구했다. A가 처음에 이를 거부하자, 윤중천은 김학의가 있는 자리에서 A에게 욕을 하고 A를 방에 밀어 넣어 김학의가 A를 간음하도록 한 바 있다. 특히 A는 윤중천과 김학의가 집단성교, 항문성교 등을 강요할 때에는 두렵고 무서워 싫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는데, 이때마다 윤중천은 A에게 말을 들으라며 위협하였고, 김학의는 이를 모두 지켜본 후 직접 간음행위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김학의는 2006. 9. 초경 윤중천, A, 다른 피해 여성 M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주는 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M에게 고함을 질러 위압감을 주고, 윤중천은 M의 손목을 잡아당겨 테이블에 올린 후 강간을 시도하기도 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A가 2013년 처음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김학의는 윤중천이 A에게 고함을 치며 욕을 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를 이용하여 A를 간음했다. 또한 김학의는 윤중천이 A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회 인사 중 가장 많이 A를 간음한 사람이다. A는 김학의에 의한 피해 역시 호소하고 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학의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A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윤중천뿐만 아니라 김학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윤중천과의 합동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수사단은 이러한 진술들은 배제하고, ‘김학의가 윤중천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폭언, 폭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하였으므로 강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피해 횟수 축소

수사단은 피해 여성 A의 피해 횟수를 아무런 근거 없이 ‘6회’로 축소했다. A는 2006. 7. 경을 시작으로, 2006. 10. 초경까지는 별장 등지에서 수차례, 2006. 10. 중순경부터 2008. 2. 경까지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매주 2~3차례 김학의로부터 강요된 성관계를 당했으며, 이를 강간으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A가 2013년 처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6회’라고 특정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인 김학의 감싸기다.

다. 합동강간치상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

문제 제기의 요지

수사단이 김학의를 합동강간치상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가법위반(뇌물)의 공소사실 중 ‘1억 원 가계

보증금 반환 채무 면제 관련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수사단이 김학의를 기소하는 시늉만 한 후 결과적으로는 뇌물죄조차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쓴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 수사단의 발표 내용

- 수사단은 김학의의 뇌물죄 공소사실 중 “2008. 10.경 윤중천으로부터 향후 형사사건 발생 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중천으로 하여금 장기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온 여성 A의 윤중천에 대한 1억 원의 가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제해 주게 한 점”을 1억 원의 뇌물수수로 판단하여 1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 시 적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으로써 형사소송법 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도록 했다(수사결과 2면).

□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중천과 피해 여성 A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며, 윤중천이 과거 스스로 했던 진술 내용과도 다르고, 피해 여성 A의 진술에 따르면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 A가 2008. 3.경 윤중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연락을 끊자, 윤중천은 A를 횡령죄로 고소했다. 윤중천 고소의 요지는 ‘윤중천 명의로 모 스포츠센터 내 여성 사우나의 슌인숍을 계약했고, 가게 소유자는 윤중천이며 관리 및 운영은 A가 하도록 했다. 그런데 위 가게 임차 기간 종료 후 A가 가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A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요지는, ‘윤중천의 지시로 가게 운영을 1년간 하다가 폐업하게 되었는데 윤중천이 돈을 안줘서 운영비로 천만 원 대출받고 외상빚도 팔천만 원 가량 있어 임대기간 1년이 지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아서 빚 정리를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윤중천에게 가게 정리를 얘기했더니 알아서 정리해서 주방장해서 먹고 살든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경찰의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윤중천은 과거 2013년 경찰수사 당시 A로 하여금 보증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은 면제하여 주고 나머지 5천만 원만 갚도록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서는 갑자기 위 보증금 1억 원이 김학의에 대한 뇌물이며, 엉뚱하게도 그 이익의 수수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A라는 것이다.

□ 문제점1(김OO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부여)

그러나 피해 여성 A의 진술에 의하면, A는 반환받은 가게 보증금에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가 없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김학의가 윤중천으로 하여금 그 채무를 면제해주게 할 일도 아닌 것이다. 윤중천의 A에 대한 횡령죄 고소는 자신의 지배에서 이탈한 A를 옹아매기 위하여 행한 악의적인 무고 고소에 다름 아니게 된다. 향후 김학의의 형사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피해 여성 A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윤중천이 김학의가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A에 대한 채무 5천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을 얻으면, 이 사건은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김학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완전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과거의 수사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김학의에게 성폭력 범죄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합동강간치상 혐의라도 기소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학의가 A를 강간한 사실을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이자 ‘뇌물’이라고 하면서, 그 적용 및 공소유지가 불분명한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했다.

□ 문제점2(관련 혐의자들 전원에 대한 면죄부 부여 및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책임 회피)

이는 마치 이번 수사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인 양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소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인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 6년 이상 지속되어 온 원주 별장 성폭력 사건 발생 기간 중 과거 수사결과 및 관련 언론 보도에서 거명된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들 역시도 ‘성접대’ 및 뇌물로 호도함으로써 동일한 잣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과거 검찰 수사상의 은폐·축소 책임을 덮고 제2의 성폭력 범죄 은폐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 남용의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2. 윤종천의 특수강간치상 등 범행 횟수 축소

수사단은 윤종천의 특수강간치상 범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 횟수를 ‘3회’로 축소하였다. 피해 여성 A는 2006. 7.경 윤종천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부터 합동강간 피해를 당했다. 윤종천은 수시로 A를 폭행, 강간하고 감시했으며, 김학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합동으로 간음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A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런데도 수사단은 윤종천과 다른 사람들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였다는 피소 사실은 기소하지 않고, 윤종천이 칼 등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간했던 경우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종천의 범행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축소하여 기소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전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태만

가.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음

수사단은 “성접대 등 향응제공행위가 2006년부터 2012년 1월 경 이루어져 구성 가능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법률조력인단이 확인해주는 내용에 의하면, 피해 여성들은 수사단이 피해를 인정한 여성 A와 비슷한 양상으로 피해를 당했고, 대부분 윤종천의 폭행, 강간이 개입되어 있으며, 윤종천이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강간을 한 경우로 고소된 건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의하면 피해 여성들은 성폭행 피해 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합동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가 상당수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수사단은 다른 피해 여성들이나 그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 완성을 핑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 한OO, 윤OO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함.

윤중천의 별장은 성접대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별장에서 2005년 인천지검 1차장 재직 당시 한OO의 명함이 발견되었고, 윤중천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OO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수사결과 11~12면). 수사 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단은 윤OO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사의 단서를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주장일 뿐이다. 과거사위가 윤OO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근거는 윤중천의 운전기사가 과거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 기재 내용이다. 윤중천의 운전기사는 올해 이루어진 수사단 수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 진술만을 근거로 과거 진술조서의 내용을 배제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4. 문제의 본질 덮기 :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태만

앞서 언급했듯, 이 사안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과거 검찰 수사에 적극적·조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당시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현직 고검장으로 법무부차관에 임명된 김학의의 범죄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이다. 2013년과 2014년 피해 여성 A를 비롯한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부 수사 결과와 조사단의 조사결과만을 보더라도 위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 과거 검찰 조사시의 사건 은폐 축소 관련 자료 및 정황

A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작성된 검찰 조서를 살펴보면, 담당 검사는 마치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문하는 것처럼 사소하고 지엽적인 진술 차이를 트집 잡는 방식으로 A를 조사했다. 조사 전에 A의

가족의 형사처분 사실을 언급하여 A가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했고, 정작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 대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다. A의 지인이자 피해자인 여성 M을 조사할 때에는 A의 진술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M에게 전달함으로써 M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정황도 보인다. 또한 A가, ‘윤중천과 김학의는 나를 포함한 여성들을 강간할 때 수차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A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A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불기소처분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 검찰 수사가 단지 ‘부실’수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 은폐이자 과거 정부의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이 유착되어 자행된 직권남용이라고 보이는 정황들이다.

특히 A는 2013년 수사 당시 윤중천으로부터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성폭행 피해 사진(이번 수사로 2007. 11. 13.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일과 존재가 확인 된 것)으로 위 1. 다항에서 언급한 보증금을 가져오라며 협박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를 윤중천과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사진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믿을 수 없다며 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A는 2014년 위 사진을 본 속기사와의 대화까지 녹취하여 제출할 정도로 사진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고소가 각하되었다. A는 2013년 경찰 수사당시에 윤중천의 조카가 성폭행 피해 사진이나 영상을 다수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윤중천 조카의 PC가 압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2번의 수사 과정에서도 결국 A의 피해 사진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 문제점

그런데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검찰의 변명대로라면 그렇게도 발견이 어려웠던 피해 사진이 이번 수사 과정 초반에 너무도 쉽게 윤중천 조카의 노트북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되었다. 사정상 피해 사진을 지운 A는 그것을 본 사람의 기억까지 더듬어 그 피해를 주장했음에도 그 사진의 존재여부부터 부정당하였다. 그러나 결국 A의 위 피해 사진이 존재했다는 것이 10년도 더 지난 지금 단 한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의 경위와 담당자, 처분자 등을 확인하여 왜 압수수색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확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단은 광OO에 대해서는 1회 수사, 그것도 서면 수사에 그쳤으며, 이OO에 대해서는 1회 수사만을 진행하였다(수사결과 1면). 윤중천에 대해 13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3. 3.경의 범죄는 2020. 3.경에 그 시효가 완성된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직권남용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수사단은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직무유기만을 언급하며 ‘직무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수사결과 10면). 수사단이 문제의 핵심을 명백히 가려내기보다는, 김학의에 대해서 빈 껍데기 내용의 뇌물 범죄로 축소시켜 구속 기소함으로써 마치 검찰이 어려운 여건에서 김학의를 구속한 듯한 외양만 만들고, 문제의 핵심 원인은 수사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넘겨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5. 요구사항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의해, 검찰은 이번에도 김학의·윤종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에 피해 여성 A의 법률조력인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 혐의 팍OO, 이OO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윤종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